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71호
- 나.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6. 5. 2.
- 라. 회부일자 : 2016. 5. 4.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서울교육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등으로 인한 해임 전력자 등의 공직 배제)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서울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교육감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5. 12~2016. 5. 18).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김용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1171호로 발의되어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서울교육의 신뢰회복 및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면에서의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¹⁾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으며, 예산편성과

1)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 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학부모,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참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격요건(제12조2)

구분	인원	자격요건
자치구별 공모위원	4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 포함)에 근무하는 자
지역회의 추천위원	3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교육감 추천위원	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
시의회 추천위원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 제 12조제6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3)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각 교육지원청 지역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제6항이 규정한 위촉 제한의 근거법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는 교육공무원의 채용 제한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사실이 있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요건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적 성격을 갖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적법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의 검토

-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등과 같은 사항은 조례규정사항에 해당된다 하겠습니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포괄적인 위임사항을 제도의 목적에 맞게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방식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신원조회 등이 어렵고, 제시된 자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예산담당관-3894(2016.05.12.))

물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원조회를 민간위원 위촉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과도한 개인정보 파악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공공성 증진과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측면에서 타당한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와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추가로 수집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 및 여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의 형평성 등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19호, 2016.1.27., 일부개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2.4.] [대통령령 제26691호, 2015.12.4., 일부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